

전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518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경(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6. 17.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517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소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6. 소외 C에게 김제시 D 지상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 착공일 2016. 8. 17., 준공예정일 2016. 11.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C은 2016. 8. 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만 원, 착공일 2016. 8. 18., 준공예정일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68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 22,114,5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7. 10. 12.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2017나12519호로 항소하여 청구취지를 12,314,50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2018. 8. 24. 항소가 기각되어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18호로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22,114,500원(골조공사대금 830만 원 + 추가공사대금 13,814,500원)의 지급을 구하여, 2019. 1. 24.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2,114,5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19. 11. 7.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114,500원이 있고, C은 피고에 대한 22,114,5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¹⁾이 있다. 그런데 C은 현재 무자력자이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C의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나. 직불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6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및 C에게 원고가 시공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피고 및 C이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따라 C이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8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나머지 기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추가공사대금 13,81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114,500원이 있고,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제1심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체출명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3) 피대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12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8. 24. 1,0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2016. 9. 5.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C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E조합에 9,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C이 2016. 12. 26. E조합으로부터 위 9,800만 원의 대출금을 수취한 사실, ③ C은 2016. 12. 27. 위 9,800만 원 중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 피고에게 반환한 금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2,114,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가 있는데, 갑 제17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22,114,5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승패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C은 선행소송에서는 C이 피고에게 5,700만 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을 완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이 사건 원도급계약일인은 2016. 8. 16.로, C이 선행 소송의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는 2019. 10. 16.에, 이 법원의 증언은 2021. 4. 22.에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C의 기억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 또는 C이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22,114,500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불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1) 관련 법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 중 직불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선행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선행소송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1) 원고는, ‘C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C에게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2,114,5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 하였다. 이에 C은 위 22,114,50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5,700만 원을 정산금으로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22,11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22,114,500원의 이득을 얻고, C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으로

22,114,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